

## 단속확인서(예시)

<b>단속대상</b>	성명	홍길동	주민등록번호	XXXXXXXX-XXXXXXXX
	주소	서울특별시 강북구 ○○○로○○길 ○○ (○○동)		
	위반소재지	강북구 ○○○○ 인근		
<b>위반사항</b>	단속일	위반 내용		비고
	2016. ○. ○.	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 배출방법 위반		
<b>단속확인</b>	<p>1. 관련법령 ○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,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함.</p> <p>2. 사실의 확인 ○ 2016년 ○○월○○일 ○○시○○분 경 해당 적발장소에서 무단투기 된 비(非)종량제봉투를 파봉하여 투기물에 다량 섞인 우편물 또는 영수증 등을 발견하고 해당 투기물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확인 함.</p>			
<b>담당자확인</b>	<p>○ 위 단속 대상자는 2016년 ○○월 ○○일 적발당사자인 ○○동 주민센터 청소담당자가 제시한 위반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적극 부정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나</p> <p>○ 2016년 ○○월○○일, 2016년 ○○월○○일, 2016년 ○○월○○일 등 수차례에 걸쳐 투기행위가 이루어진 점, 투기물이 발견된 장소가 투기자의 집 앞인 점, 이웃 주민의 증언 등등</p> <p>○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해당 투기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관련법령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배출한 점이 인정되며, 폐기물관리법 제15조1항 배출방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.</p>			
<p><b>위와 같이 단속확인서를 제출합니다.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6년 ○○월○○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담당자 소속 : ○○주민센터 직급 : 지방행정서기 성명 : 홍길동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확인자 소속 : ○○주민센터 직급 : 지방행정주사 성명 : 이순신 (인)</p>				